

## 2

# 서울시-아랍에미리트 우호도시결연 체결 추진

### □ 추진개요

- 추진대상 :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교통부

(Department of Municipalities and Transport)

#### 아부다비 행정교통부(DMT)

- 조 직 : 아부다비는 아부다비(Abu Dhabi), 알 아인(Al Ain), 알 다프라(Al Dhafra) 3개 지역으로 구성, DMT는 3개 지역(시)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임
- 역 할 : 도시개발계획, 교통, 인프라 규제 및 모니터링, 환경, 경제성장 등 공공서비스 제공 및 관리
- 비 전 :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 혁신 및 구축, 미래 세대를 위한 번영

- 체결시기 : 5월 중 ※ 서울시 대표단 중동 출장 중
- 체결방법 : 양 도시 시장 및 의장 대면, 직접 서명

### □ 우호도시 협약 내용

- 양 도시 우호도시 결연 선언, 도시계획·교통·스마트 시티 분야 교류
- 경제협력 등 다양한 교류 활성화
- 양 도시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, 인적교류, 연구개발 협력

### □ 향후계획

- 서울시-아부다비 행정교통부간 우호 결연 체결 : 5월 중

붙임 : 양해각서 국문(안) 1부

## □ 서울시-아부다비 행정교통부 협정서(안) : 국문본(영문 번역)

대한민국 서울특별시와 아부다비 행정교통부 간  
우호도시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

본 협약서에서는 개별적으로 당사자 또는 공통적으로 양 당사자라 한다.

## 제 1 조

본 협약은(대한민국 서울특별시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교통부 간 우호도시협약)으로 명칭 한다. 위 전문은 본 협약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한다.

## 제 2 조

본 협약은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 국민 간의 양자 관계 및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양 당사자는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등과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양 당사자 간의 협력 및 조정을 확대하고 강화하고자 한다.

## 제 3 조

양 당사국은 다음 분야에서 경험 및 모범 사례의 교류를 위한 효과적인 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한다:

- 도시 및 교통 계획
- 공공 서비스
- 자율주행 차량 및 대중교통 혁신
- 스마트 시티 솔루션, IoT 적용 및 스마트 시스템
- 혁신적인 교통 솔루션
- 도시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 솔루션 및 스마트 에너지 혁신
- 도시를 위한 데이터 분석, AI 활용 및 오픈 데이터 이니셔티브
- 도시 개발 분야의 연구 개발 촉진 및 관련 전시회 및 워크숍 개최

양 당사자는 평등과 상호 이익에 기반하여 서울특별시와 아부다비 간의 협력 관계를 수립한다.

-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협력 범위 확대를 목표로 의견 교환 및 검토를 개선할 수 있으며 그러한 협력범위 확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양 당사자의 상호 동의가 있어야 한다.

## 제 4 조

양 당사자는 본 협정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표명하고,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대로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**제 5 조**

양 당사자의 사전 서면 합의 없이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이나 항목에 대한 수정, 변경, 누락 및/또는 추가도 허용되지 않는다.

**제 6 조**

양 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라 취득한 모든 정보 및 자료의 기밀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며, 해당 정보 또는 자료의 소유자인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.

**제 7 조**

양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 소유의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을 준수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.

**제 8 조**

당사자 일방은 상대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협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달리 이전할 수 없다.

**제 9 조**

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3 년간 유효하며, 당사자 일방이 계약 만료일 최소 12 개월 전 협약 갱신 의지를 밝히는 서면 통지를 보내 본 협약의 갱신 의사를 통지하고 상대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사한 기간 동안 갱신할 수 있다.

당사자 일방은 상대 당사자에게 협약 해지 6 개월 전 서면 사전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단, 본 협약의 해지는 본 협약의 조항에 따라 해지 이전에 시작된 절차 또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발생할 공동 프로그램의 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**제 10 조**

본 계약에 따른 양 당사자 간의 관계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.

각 당사자는 법적,조직적,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한다.

양 당사자는 항상 본 협약 조항의 이행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.

**제 11 조**

본 협약은 2024 년 .. 월 ..일 ..... 에서 아랍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로 된 원본 사본으로 각 ... 부씩 작성되며, 각 당사자는 자체적으로 각 1 부씩 보관한다.

이를 증명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본 협약서에 서명한다:

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
오세훈 시장

아부다비 행정교통부  
모하메드 알리 알 쇼라파 의장

※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(친선결연 등의 의결)